

프랑스의 최근 3G 면허 할당 논의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연구원 전수연
(T. 570-4262, syjun@kisdi.re.kr)

1. 개요

지난 9월말 프랑스에서는 네 번째 3G 면허 할당을 앞두고 진행된 자문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자문서의 초점은 이동통신시장의 신규진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3G 면허 할당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신규진입자 유도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현재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된 3G 면허 할당 경위와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할당절차를 거치면서 대두된 기존사업자 SFR과 Orange에 대한 정부의 3G 면허료 인하 방침에 대한 EU 법원의 판결('08. 10. 9)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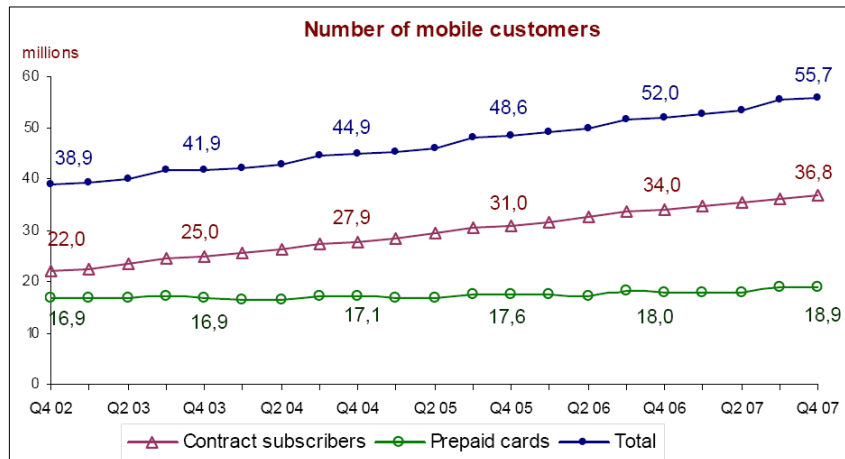
2.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

프랑스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08년 1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7.1% 성장한 5,57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 가량은 결합서비스의 형태로 가입된 것으로 추계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6~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07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Orange France 42.6%, SFR 37.2%, Bouygues Telecom 20.1% 순으로 크게 3개 MNO에 의해 시장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1위사인 Orange는 글로벌 사업자로 프랑스 외에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중이다. 2000년 12월 FT에 인수된 Orange는 FT의 이동통신 사업부문과 합쳐져 Orange SA라는 이동통신 지주회사로 탄생하였다. 2위사인 SFR은 Vivendi Universal의 자회사로 '07년 7월 Tele2 인수에 이어 12월 원래 보유하고 있던 Neuf Cegetel의 지분 40.5%에서 29.5%를 추가 확보해 FT와 경쟁하는 종합 통신사로 거듭났다. 3위사인 Bouygues Telecom은 1994년 설립됐으며, 1996년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림 1] 프랑스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



자료: Arcep(2008)

3G 서비스는 Bouygues Telecom이 최초로 '03년 3월에 상용화하였고, 이후 '04년 5월과 12월에 SFR과 Orange가 각각 상용화하였다. 3G가입자 수는 '08년 3월 기준 총 가입자의 13.4%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08년 9월 기준, 각 사별 WCDMA 가입자 비중은 SKT가 32%, KTF가 65%에 달한다.

<표 1>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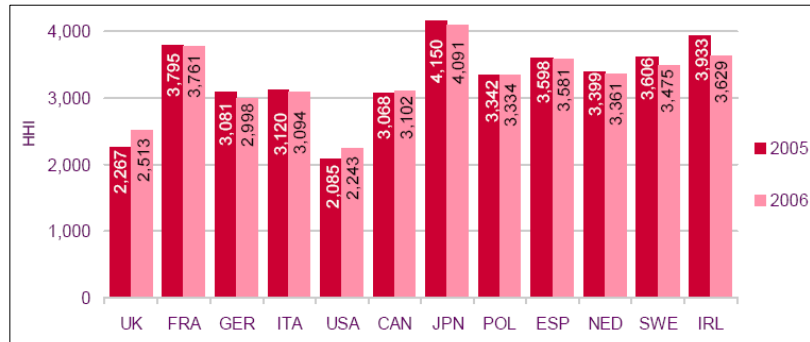
사업자	보유 네트워크	개시일	가입자(만명)
Orange	GSM 900	07/1992	22.87
	UMTS	12/2004	2.88
SFR	GSM 900	12/1992	15.62
	UMTS	06/2004	4.5
Bouygues Telecom	GSM 1800	05/1996	9.31
	UMTS	03/2003	0.35
총 GSM 가입자			48.1
총 UMTS 가입자			7.42
총 가입자수			55.21

자료: 2008년 3월 기준, PaulBudde

2007년 말 Ofcom이 발표한 '국제 통신시장 2007'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모바일 시장집

중도가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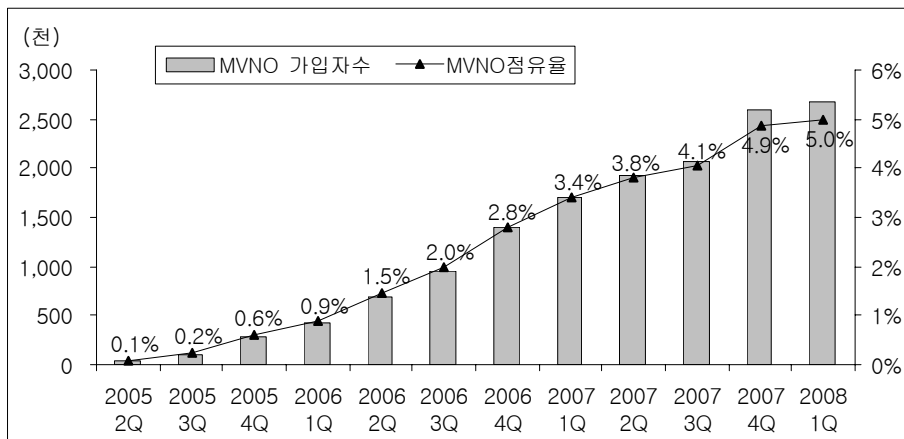
(그림 2) 2005년, 2006년 모바일 가입자 시장 집중도(HHI: Herfindahl-Herschman Index)



Source: IDATE/industry data/OECD/CRTC/Ofcom

Note: Estimate for Germany includes resellers

(그림 3) 프랑스의 MVNO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추이



자료: Conseil de la concurrence(2008), KISDI(재인용)

MVNO의 가입자 수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분기 현재 26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과 통화량 측면의 점유율은 가입자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2007년말 MVNO의 매출액과 통화량 점유율은 각각 2.4%, 1.4%에 불과하다. MVNO의 시장진입으로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MVNO의 서비스 제공이 틈새시장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파급력이 약하고, 특히 MVNO가 선불제 위주로 마케팅

을 전개하다보니 요금경쟁 역시 선불제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프랑스의 3G 면허 할당

가. 3G 면허 할당

프랑스는 현재까지 총 세 번에 걸쳐 3G 면허할당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2000년에 최초로 프랑스 정부는 네 개의 3G 면허에 대해 입찰을 개시하였고, 면허기간 15년에 면허가 49억 5천 유로로 할당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때 면허는 입찰에 응했던 SFR과 Orange 두 사업자에게만 할당되었다.

해당 규제기관은 이후 2001년에 나머지 2개의 미할당 면허를 각 6억 1,900만 유로(3G 매출액의 일부를 추가)의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 개시했다, 이때 Bouygues Telecom이 하나의 면허를 할당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할당된 2개의 면허는 6억 1,900만 유로로 면허가가 조정되어 기존 두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면허료 삭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세 번째로 면허를 할당받은 Bouygues Telecom은 EU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본 항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9일자 EU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후 나머지 한 개 면허의 할당을 앞두고 '07년 3월에 규제기관은 자문서를 발간하였다. 자문서는 기존의 3G 면허 입찰 미달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여분의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활용, 이통시장 경쟁의 활성화 및 3G 서비스의 900MHz와 1800MHz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때 면허조건은 두 번째 할당시와 동일했다.

'07년 6월 입찰 종료시까지 입찰에 응한 사업자는 Iliad의 100% 자회사인 Free Mobile 뿐이었다. 그러나 Iliad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할당대가 지불의사를 표현하지 않음에 따라 '07년 10월 자동 실격처리되었다.

나. 3G 면허할당에 관한 자문결과('08년 9월)

네 번째 3G 면허할당에 관한 자문이 '08년 6월부터 수행되어 10월 초 결과가 발간되었다. 본 자문에 각 지방공공단체,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이용자 연합 등 각계에서 20여개의 답신이 접수되었다.

자문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주파수의 일부 혹은 모두에 신규진입자 우선부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였다. 이는 15MHz duplex 혹은 10MHz duplex를 신규진입자용도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이통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2.1GHz대역내 FDD 주파수 할당과 관련하여

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현재의 이통 시장은 건전한 경쟁의 장이 못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네 번째 네트워크 사업자를 빨리 진입시키는 것이 경쟁을 자극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보았다.

신규진입용 면허의 보류는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 개발, 소매시장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기존 사업자와 완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동기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격과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소매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동시에 MVNO 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결국 도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진입 수단으로 2.1GHz 주파수 할당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이미 가용한 주파수 자원이라는 점과 광범위한 장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MVNO 도입 조건의 부과도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의 활성화의 중요한 기폭제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 기존사업자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은 충분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경쟁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4사업자의 진입은 통신영역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MVNO 도입조건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태이며, 경쟁을 고취시키는 것 자체가 2.1GHz 주파수 할당의 주요한 이슈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자보다 해당 대역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3G 모바일 서비스의 전국 커버리지와 관련한 의견들을 보면, 2.1GHz 주파수의 할당과 함께 900MHz 주파수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진입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전국 커버리지 달성을 가능케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기존사업자의 3G 면허료 삭감 결정에 대한 EU의 판결('08년 10월)

지난 10월 8일 EU 사법법원의 고문은 프랑스 정부가 2개의 3G 면허에 대해 면허료를 삭감한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Bouygues의 주장을 기각했다.

2000년 당시, 프랑스 정부는 최초로 면허기간 15년에 총 면허가 49억 5천유로의 조건으로 두 개의 3G 면허를 할당하였다. 이후 Bouygues telecom이 면허기간 20년에 6억 1,900만 유로로 면허를 할당받은 후 기존의 두 사업자에게도 그 차액인 총 80억 유로가량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04년에 EC가 프랑스 정부의 면허가 인하를 승인하였고, Bouygues는 그러한 결정을 반복

하기 위해 EU 사법법원에 EC와 프랑스 정부, 두 기존 사업자를 처음 제소했다.

이후 '07년에 EU 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는 프랑스 정부의 가격인하는 3사 모두에게 중립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였고, 가격인하는 합법적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Bouygues는 항소를 선택했고, 이에 대한 법정 고문의 결정 권고가 지난 8일 발표된 것이다. 이 권고안은 최종 판결시에 최고 판사위원회에 의해 참작될 것이다. 보통 EU 법원이 권고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 일은 매우 드문 일로 여겨진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최초 3G 면허 할당시에는 인터넷 버블이 존재하였고 3G 서비스에 대한 수익성 전망이 밝았으나, 현재는 닷컴 버블이 사라진 후 기대했던 수익성 보다 낮고 3G 서비스로의 전환이 느림을 감안하여 초기 조건을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2개 면허권자들이 Bouygues와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유지하기 위해 비등한 수준을 지불해야 함을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3G 면허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공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Bouygues는 이에 프랑스 정부는 Orange(FT)의 26.7%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불법적 정보보조임을 지적하고, Bouygues는 최초 할당에 참여하지 않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상대적으로 긴 면허기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결정은 SFR, Orange에게는 3G 서비스의 부담에 대한 경감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네 번째 3G 면허입찰을 진행해 온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향후 입찰자들에게 면허 할당 절차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어

이번 EU의 발표는 각 국가는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추가적인 지원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만약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면허료를 인하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었다.

올해 초 해당 규제기관(Arcep)은 Orange와 SFR이 900MHz 대역내 3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청을 승인했다. Bouygues Telecom도 '09년에 자사의 면허를 900MHz 주파수를 재이용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에 걸쳐 3G 면허 할당을 진행해오고 있다. 3G 서비스에 대한 900MHz 주파수 이용 특혜와 기존 할당 면허의 가격 인하 결정이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의 사업자의 진입여건, MVNO 경쟁환경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참고자료:

- [1] Arcep, "Executive summary of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award of 3G licences in the 2.1GHz frequency band in Metropolitan France," 2008. 9
- [2] _____,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in France in the 1st quarter 2008," 2008. 8
- [3] EU Court of Justic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urth Chamber) of 4 July 2007. Bouygues SA and Bouygues Telecom SA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tate aids. Case T-475/04,," 2007
- [4] _____, "Opinion C-431/07 P Bouygues and Bouygues Telecom v Commission", 2008. 10
- [5] Ofcom,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2007," 2007. 11
- [6] 강인규, "프랑스 MVNO 시장 및 규제 동향", KISDI, 2008. 10

미국 청소년의 비디오 게임 이용 현황과 사회활동 참여도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연구원 박현주
(T. 570-4307, hjpark@kisdi.re.kr)

1. 개 요

미국 청소년들에게 비디오 게임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최근 비디오 게임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게임이 학문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시민/정치활동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대규모 양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¹⁾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비디오 게임 놀이 및 비디오 게임과 시민/정치활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본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보고서는 Princeton Survey Research Associates에서 12~17세 청소년, 그들의 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1일~2008년 2월 5일까지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샘플사이즈는 1,064명이다.